

## 〈별표23〉 말기폐질환

### (End Stage Lung Disease)

- ①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.
-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
  -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% 이하
- ② 약관에 규정하는 말기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 2020-175호, 2021.1.1.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말기폐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.

분류항목	분류번호
1. 인플루엔자 및 폐렴	J09~J18
└(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(J17.1*))	└(B25.0)
└(폐렴이 합병된 홍역(J17.1*))	└(B05.2)
└(수두폐렴(J17.1*))	└(B01.2)
└(폐ток소포자충증(J17.3*))	└(B58.3)
2.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	J20~J22
3. 만성 하부호흡기질환	J40~J47
4.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	J60~J70
5.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	J80~J84
6.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	J85~J86
7. 흉막의 기타 질환	J90~J94
8.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	J95~J99
└(류마티스폐질환(J99.0*))	└(M05.1)

주)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말기폐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
- ③ 상기 ① ~ ②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.
- (예1) ①의 '가.~나.'의 특징을 모두 보이나 ②에서 정한 대상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 
 (예2) ②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지만 ①의 '가.~나.'의 특징을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
- ④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- ⑤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,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.
- ⑥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.